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쳐보세요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SUPERVISOR SERVISOR S	보 도 참 고 자 료				
782年82.35	보도	20	17. 11. 9.(목) 조간	배포	2017. 11. 7.(화)
담당부서	보험감독국		진태국 국장(3145-7460), 양진태 팀장(3145-7471)		

제목: 금융꿀팁 200선 - ① 보험금 청구에 관한 필수정보 6가지

- □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 매주 1~3가지씩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 동시에 2016.9.1일 개설한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 에도 게시하고 있음
- □ 이에 따라 일흔한번째 금융꿀팁으로, "보험금 청구에 관한 필수 정보 6가지"를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림

<별첨> 금융꿀팁 200선 - ① 보험금 청구에 관한 필수정보 6가지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은 '금융관행 개혁 포털' (http://better-change.fss.or.kr) 내 '국민 참여방'으로 제보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금융꿀팁 200선 - ①

제 목	보험금 청구에 관한 필수정보 6가지
	■ (사례1) A는 사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고 있음. 실손보험 의료비를 청구할 때마다 진단서 등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하고 있어 서류발급시간 및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등 불편을 겪었음
사 례	■ (사례2) B는 암수술을 받고, 치료를 위해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됨. 입원기간이 길어지면서 수술비와 입원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암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추가적인 의료자문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어 대출을 받아 수술비와 입원비를 지급했음
	■ (사례3) C는 등산을 하다 크게 다쳐서 혼수상태에 빠짐. 배우자 D는 C 명의로 상해보험에 가입했던 것을 기억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려 하였으나, 보험금 청구권자 (수익자)인 C만 청구할 수 있다는 보험회사의 답변을 듣고 난감하였음
	【 보험금 청구에 관해 알아두면 유익한 꿀팁 6가지 】
꿀 팁	 100만원 이하 보험금은 진단서 사본제출 가능 ②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많더라도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 ③ 보험금 지급이 사고조사 등으로 늦어지면 가지급제도 활용 ④ 치매, 혼수상태인 경우 대리청구인을 통해 보험금 청구 가능 ⑤ 지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만기보험금 등 자동 수령 가능 ⑥ 보험금 수령시, 연금형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방법 변경 가능

① 100만원 이하 보험금은 진단서 사본제출 가능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직장인 등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입·퇴원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서류를 **발급**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청구시마다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서류발급비용 : 입퇴원확인서 1~2천원, 일반진단서 1~2만원, 상해진단서 5~20만원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에 대해서는 온라인, 모바일앱, FAX 등을 통해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액보험금에 대해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동일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도 원본서류 준비 등으로 인한 시간과 서류발급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꿀 팁

※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보험금**에 대해서는 증빙서류(일반진단서 등)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보험회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원본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시 사본제출 인정기준 및 제출방법 >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 : 입·퇴원확인서, 일반진단서, 상해진단서 등

· 사본제출 인정기준 : 100만원 이하 소액보험금 · 제출방법 : 온라인, 모바일앱, 우편, 팩스 등

②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많더라도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과 부채(빛)는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규모를 고려**해서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때, 상속재산과 사망보험금의 관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 대부분의 상속인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생각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고 **주장**할 때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한다(2004.7.9. 선고 2003다29463 판결)"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즉,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의 고유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포괄 지정된 경우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꿀 팁

다만,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가해자(상대방)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고인에 대한 위자료나, 사고가 없었다면 고인이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예측되는 수입(일실수입)에 대한 손해액 등 피상속인(고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u>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개념</u> >

- . **상속포기** : 상속인의 지위를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음
- . **한정승인** : 상속받는 재산으로 고인의 빚을 갚고 잔여재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아 빚이 남더라도 갚을 의무가 없음
- * 상속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법률구조공단(☎132) 등에 문의

③ 보험금 지급이 사고조사 등으로 늦어지면 가지급제도 활용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를 받으면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을 하는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심사가 하루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고내용**이 **복잡**하거나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질 경우, 집에 **화재**가 나서 피해를 입거나, 사고로 인해 크게 다쳐서 **거액**의 **치료비**가 예상되는 소비자들은 **화재복구비용**이나 **치료비**를 **본인**이 우선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져서 소비자들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란, 보험회사가 지급사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추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꿀 팁

보험금 가지급은 생명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화재보험, 자동차 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상품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에 따라 **가지급금 지급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지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예시) >

- . **자동차보험** : 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가해자의 손해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② 보험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
- . **보증보험**: ① 채무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거나, ②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④ 치매, 혼수상태인 경우 대리청구인을 통해 보험금 청구 가능

최근 **기대수명***의 **증가** 등으로 고령자의 **보험가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보장보험, 고령자전용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 출생자가 출생 직후부터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

보장성보험은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장기 계약상품인데, 계약자가 치매나 혼수상태 등으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보험을 통한 보장이 필요한 소비자가 보장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특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란, 치매나 혼수상태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것으로, 보험가입 시점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후에도 특약에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계약자가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사고로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대리청구인이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서, 사고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보험상품**은 대리청구인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의 **약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u>생명보험의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예시)</u> >

	-		
구 분	내용		
신청자격	· 보험계약자		
대리청구인 지정(변경)시 구비서류	· 지정대리청구인 지정 또는 변경신청서(회사양식) 및 신분증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대리청구인 범위	 보험수익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보험수익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보험수익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보험수익자의 3촌 이내의 친족 		
대리청구인의 보험금청구시 구비서류	· 청구서(회사양식) 및 신분증 · 사고증명서 · 보험수익자의 인감증명서 · 보험수익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 등		
* 보험금을 보험수익자나 보험수익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음

⑤ 지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만기보험금 등 자동 수령 가능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제 때 청구할 수 있도록 **만기보험금**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 등이 바뀐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만기 보험금에 대하여 안내받지 못하거나, 보험이 만기가 되어 받아야 할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금이 오랜 기간 방치 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받을 계좌를 미리 지정해 놓으면 **만기보험금** 등이 **발생**되는 **즉시** 지정계좌로 **자동이체**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꿀 팁

보험금 지급계좌는 보험가입 시점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후에도 콜센터 등을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마다 제출 서류, 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 준비서류 등은 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의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등록신청 접수경로별 보험금 지급계좌 제출서류(예시) >

. 지점 방문 : 신분증, 통장

. 콜 센 터 : 녹취를 통해 지급계좌 등록

. 우 편:계좌등록신청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등

*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이체 실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계좌에 한해 등록 가능

⑥ 보험금 수령시, 연금형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방법 변경 가능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은 입원이나 수술에 관한 보험금보다 금액이 큰 경우가 일반적인데, 보험상품에 따라서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을 **한꺼번에 지급**(일시지급)하거나, **나누어서 지급**(분할지급)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일시지급되는 보험금의 수령방법을 분할지급으로 변경하거나, 분할지급되는 보험금을 일시지급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이 사망한 경우 유족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서 분할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 후유장애로 인해 직장을 잃은 경우 일시지급되는 후유장애 보험금을 나누어서 받는 것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꿀 팁

- · 일시지급되는 보험금을 분할지급으로 변경할 경우: 분할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해 일정 이율*을 가산하여 지급
- · 분할지급되는 보험금을 일시지급으로 변경할 경우 : **보험금**에서 **일정** 이율*을 **할인**하여 지급
 - * 평균공시이율(`17년 현재 3.0%)을 연단위 복리(複利)로 계산

다만, 동 제도는 생명보험상품과 손해보험회사의 질병·상해 보험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